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240

발의연월일: 2025. 1. 6.

발 의 자:윤준병・박희승・정동영

허 영ㆍ허종식ㆍ서영교

박민규 • 문대림 • 김태선

이춘석 · 조계원 · 민형배

이원택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147조부터 제151조까지에서 중앙회의 우선출자 발행 근거 및 증권의 발행, 양도 등을 규정하면서 제152조에서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우선출자의 발행·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38조의2에서 우선출자증권 발행사항의 공고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이 가운데 제37조는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관한 규정으로, 우선출자는 현행법 제68조 및 제164조에 따라 자기자본에 포함되므로 우선출자를 매입소 각하는 경우 자기자본 규모의 변동을 가져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령체계의 적합성에 맞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하여 위임 범위에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법에 명확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2조).

법률 제 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2조 중 "모집 등에"를 "모집·매입소각 등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2조(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	제152조(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		
의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하는	의 사항)		
사항 외에 우선출자의 발행・			
<u>모집 등에</u> 필요한 사항은 대통	모집·매입소각 등에		
령령으로 정한다.			